

◆ 질의와 회신 ◆

지방재정제도 운영 질의·회신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회계·계약 운영 관련

- 회계제도팀 제공 -

1. 계약해지시 대가지급 우선순위 관련 질의

【질 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계약을 해지한 경우 타설 기성금(미지급 기성대가)에 대한 지급시 선금상계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중 어느것을 우선 하는지?

회 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이 경우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으나

동 조건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가를 지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 이와 상계할 수 있는 것임.

2. 지역업체 의무하도급 조건을 특수조건에 명시가능 여부 질의

【질 의】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을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의무하도급 범위내(50%)에서 관내 건설업자의 의무하도급과 공사인부 등 당해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

회 신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하도급관련 회계통첩(행자부 재정과-2469, 2003. 11. 21)』에 의거 하도급 업체를 시·군·구 지역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통보한 바 있음.

3. 특정인과의 학술용역 관련 질의

【질 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특정인이 되는 사실의 입증을 위한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용역수행자가 관계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가·등록·허가 등의 서류를 구비서류로 보아 비치하여야 하는지?

회 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특정인의 기술·용역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서,

회계예규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집행시 서류구비요령” 제5조제1호의 규정에 “특정인의 기술·용역 등으로 인하여 경쟁에 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사실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토록 하고 있음.

4. 기초금액 착오입력시 입찰 유·무효 관련 질의

【질 의】

공사 입찰을 집행하면서 복수예비가격 산정시 기초금액을 착오입력하여 복수예비가격이

기초금액에 $\pm 3\%$ 범위를 초과하여 $-6.76\% \sim -1.1\%$ 범위로 작성된 경우 입찰 유·무효 여부?

회 신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자부예규 제50호)에 의하면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 $\pm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 \sim 0\%$ 범위 내에서 8개, $0\% \sim +3\%$ 범위 내에서 7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사항과 같이 복수예비가격 작성 시 기초금액을 착오입력하여 $-6.76\% \sim -1.1\%$ 범위로 작성된 경우라면, 입찰절차의 중대한 하자투명성 저해 및 불공정 소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입찰절차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재입찰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5. 전자입찰(예정가격작성 오류) 관련 질의

【질 의】

폐기물처리용역 전자입찰을 시행하면서 입찰공고문에는 복수예비가격작성을 기초금액 대비 $\pm 3\%$ (+7개, -8개)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한다고 했는데 전자입찰시스템상의 입력오류로 인해 $\pm 2\%$ (+8개, -7개)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개찰을 완료한 사항에 대한 입찰 유·무효 여부

회 신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자부예규 제50호)에 의하면, “기초금액에 $\pm 3\%$ 상당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 \sim +3\%$ 범위 내에서 7개, $0\% \sim -3\%$ 범위 내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사항과 같이 복수예비가격 작성이 기초금액 대비 $\pm 2\%$ 로 작성된 경우가 계약담당공무원의 고의 등 중대한 하자가 아닌 단순착오에 의한 경우로서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지 아니하였고 개찰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라면, 적격심사 등 낙

찰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계속 이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새로운 입찰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발주처에서 입찰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6. 시공경험평가 관련 질의

【질 의】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발주한 “○○천 인도교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입찰공고문상에 낙찰자결정방법을 “시공경험평가는 보도육교 또는 인도교 연장 50m 이상의 시공실적만을 합산 적용하고 평가 시 적용 추정가격은 2,126,500,000원임”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50m 이상의 시공실적만을 합산 적용함을 근거로 평가기준규모를 연장 50m로 인정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36호) 별지 3의 규정에 의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합계에 대한 평가(90%)는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를 대비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누계 금액의 합계에 대한 평가(10%)는 추정가격을 대비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7. 물품 납품실적 적용 관련 질의

【질 의】

- ① 전기관련 계장제어장치(시스템 및 계측기기)가 포함되어 있는 물품을 지자체로부터 수주받아 제작 설치하고 전기공사협회에 공사실적으로 신고한 경우, 동 공사실적에 포함되어 있는 물품(계장제어)에 대하여 물품납품 실적으로 2중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② 원수급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전기계장공사에 대하여 원수급자 및 하수급자가

각각 전기공사협회에 실적 신고를 한 경우, 동 공사실적에 포함되어 있는 계장제어장치(시스템 및 계측기기) 물품에 대하여 물품납품 실적으로 3중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발주처에서 공사로 계약하여 준공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공사실적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아 관련협회(전기공사협회)에 시공실적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반복하여 물품납품 실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될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처에서 실적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8. 공동도급 공사의 실적인정 관련 질의

【질 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를 발주하여 낙찰예정업체를 선정하고 적격심사를 완료하였으나, 낙찰예정업체에서 제출한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장공사』의 실적은 2000. 3. 20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25%)으로 참여하여 준공한 실적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업체는 계약당시(2000. 3. 20)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없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만을 보유하고 시공에 참여한 후 2001. 3. 1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공사를 준공하였는 바, 동 실적을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회 신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136호) 별표 1(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도급 또는 단독으로 기타 다른 법령에 의거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을 보유하지 않고 시공한 공사의 실적은 불인정하며, 관계법령의 제·개정으로 면허(등록) 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실적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면허(등록) 사항을 충족하고 시공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사항의 경우에는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해당면허(등록) 사항을 충족하고 시공한 경우라면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시공과 관련된 제반서류(공정표 등)를 검토하여 발주처에서 판단·처리할 사항임.

9. 기술자보유확인 기준일 관련 질의

【질 의】

1. 50억미만 시설공사에서 기술자보유확인시 기준일을 입찰등록마감일(입찰일전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입찰등록마감일이란 의미가 투찰마감일인지? 아니며, 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마감일인지?
2. 입찰등록마감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기준일이 어떻게 되는지?
3.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과 입찰등록마감일 및 입찰일(개찰일)이 동일한 경우 기준일이 어떻게 되는지?

회 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136호) 별지 5의 규정에 의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등록마감일(입찰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토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입찰등록마감일이라 함은 입찰일 전일을 의미함
- 질의 2에 대하여
 - 입찰등록마감일(입찰일 전일)이 휴일인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거 한국건설 기술인협회에서 입찰등록마감일(입찰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확인 받으면 됨
- 질의 3에 대하여
 - 입찰등록마감일과 입찰일(개찰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입찰일 전일을 기준으로 평가함.

10. 관용차량 매각입찰 관련 질의

【질 의】

입찰공고시 입찰참가등록 서류로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일반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제출토록 하여 입찰을 집행한 후 A씨를 낙찰예정자로 선언하였으나,

A씨의 입찰참가 등록서류를 확인한 결과 주민등록등본이 제출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차순위자가 입찰무효를 주장하고 있어 아래사항을 질의함

- 질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미제출하였으므로 낙찰예정자의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입찰 무효사유는 세출의 원인이 되는 입찰의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세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의 경우 동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 여부를 제외하고는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은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1. 특정회사 물품 지정 관련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도로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전용도로 공사에 사용되는 우레탄 원자재는 A, B, C, D사 등 몇 개의 회사가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특정회사(A사)의 제품만을 지방서 상에 명시해 놓고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명시가 없다면 특정회사(A사)의 제품을 꼭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정부계약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회계통첩(회제 41301-965)에 의거 입찰조건, 지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모델)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사례와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사례가 없도록 주지한 바 있음.

12. 기술자보유확인 평가 관련 질의

【질 의】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경쟁입찰공사의 적격심사시 입찰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기술자보유현황을 확인받기전 중급기술자 1인이 퇴직하여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이 미달된 사항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9조의2 규정에서는 50일 이내에 건설기술자를 충족하면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데 적격심사시에도 50일 이내에 기술자를 충족시키면 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136호) 별지 8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시 입찰등록마감일(입찰일 전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당해 공사수행능력상 결격사유(△10점)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며,

이 경우 기술자보유확인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 협회를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확인서에 의하여만 평가하는 것임.

13. 물품구매입찰 신인도 평가 관련 질의

【질 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한 공기업(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기준(행자부예규 제138호) 별표 “신인도평가”시 감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재정법 제6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자격제한 기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자격이 제한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음.

14. 환지 말박기측량 입찰자격 관련 질의

【질 의】

- ① 기초자치단체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중 환지확정 말박기 측량용역을 지적공사와 단독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 ② 지적법 제41조제2항(지적측량업등록)에 의하여 등록된 업체가 상기 환지확정말박기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회 신

- 질의 ①에 대하여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함.
- 질의 ②에 대하여
 - 동 사항(환지확정 말박기 측량업무)은 지적법 제41조의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에 해당됨.

15. 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관련 질의

【질 의】

『○○연안정비공사(추정가격 383,405천원)』의 입찰결과 1순위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 2순위 업체에서 1순위 업체의 실적이 허위로 신고된 실적이라고 이의를 제기한 바,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누계액의 증명서를 발급한 대한건설협회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결과, 대한건설협회에서는 1순위 업체가 2003년도 기성실적으로 신고한 실적이 허위신고에 의한 실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통보된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 이의신청 내용 : 1순위 업체는 2003. 12. 12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이므로 건설협회에 신고한 2003년도 기성실적 430,000천원은 허위실적임

회 신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공시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신고 처리의 권한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협회에 위탁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136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공경험 평가방법 중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당해 발주공사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고 이 경우 당해 업체가 관련협회에 평가자료를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내용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당해 업체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6. 시설공사의 신인도평가 관련 질의

【질 의】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경쟁입찰공사의 신인도평가기준과 관련하여 당사는 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로서 2003년도에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제11조의 규정 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현재는 동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상기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2004년 7월 건축공사업 등록을 반납하고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상황에서 당사가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만약 해당된다면 공동도급시 대표사에게 미치는 배점기준은 얼마나 되는지?

회 신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136호)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제출받아 평가하는 것으로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신인도 평가시 감점(-3점) 적용되고 신인도 평가시 관련 심사항목은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하는 것임.

아울러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는 동 예규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함.

17. 낙찰자 결정 취소시 처리방법 관련 질의

【질 의】

『○○공사』 입찰결과 1순위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낙찰자를 결정하였으나, 계약절차 이전에 1순위자가 상호 및 대표자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발견되어 입찰무효 처리하고 낙찰자 결정을 취소한 사항과 관련하여,

- 차순위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입찰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는지?

회 신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자부예규 제135호)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8.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 관련 질의

【질 의】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적격심사시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당초 계획서에 명시된 하도급 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136호)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를(10점) 위해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이행치 않을 경우 제재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를 통해 낙찰자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을 변경해서는 아니 됨.